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17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재옥)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자진회수 명령, 미이행 시 매각·폐기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현행법 제33조제3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34조의2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건

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찾아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소유자등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소유자등이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그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제3항) 하는 등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사무의 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각 시·도의 대부분의 사무위임 조례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라 함) 제33조는 국가가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하고 있고,

2021년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도록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제21대국회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¹⁾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한 바 있음.

개정안은 현재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도지사의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점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이같은 수행 방식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과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지성 높은 사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4563호, 2022.1.25. 정부 제출), 2024.5.29. 임기만료폐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범수의원(2건)과 윤재옥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네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